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22
------------	-----

2015년 6월 29일  
교 육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15년 6월 17일

다. 상정일자

- 제26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15년 6월 29일 상정·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정책국장 이근표)

가. 제안이유

- 현행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이하 응시수수료, 20,000원)는 약 24년 전(1991.10.24.)에 정한 금액으로써 그동안의 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비용 상승 등으로 현 실정에는 맞지 않는 낮은 금액이라서 시험 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확대되고 있음.

- 이에 응시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응시수수료를 30,000원으로 인상 조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자 1인당 응시수수료 10,000원 인상(안 제2조)

- 1인당 응시수수료 : 20,000원 → 30,000원

##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 가.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522호로 제출되어 2015년 6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비용 상승 등으로, 교육청의 재정 부담 증가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이하 '응시수수료'라 한다)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 나. 주요 검토의견

#### 1) 응시수수료 개정 취지에 대한 의견

- 현행 교육부령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납부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 당초 응시수수료 관련 사항은 동 규칙을 통해 일정한 금액을 수납하여 왔으나<sup>1)</sup> 1991년 10월 8일 상기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응시수수료 관련 사항이 시·도 조례로 위임되었고, 1991년 10월 24일 동 조례 제정 당시 20,000원으로 응시수수료가 책정되어 24년 동안 유지되어왔습니다.
- 응시수수료가 최초 규정된 이후 지난 24년 동안 물가인상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고려할 때 응시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2) 응시수수료 인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의견

-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은 크게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누어지며 1차 시험은 기입형·서술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2차 시험은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실기시험 포함)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예·체능과목, 과학교과 등 실기·실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실기·실험능력을 평가하기도 합니다.<sup>2)</sup>
-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을 관리하기 위해 2013년에 약 24억 9천만원, 2014년에 26억 4천만원, 2015년에 약 22억 3천만원을 지출하였는 바, 이는 평균적으로 전체 임용시험 관련 비용의 약 93.6%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결과적으로 응시자는 전체 소요 비용의 약 6.4%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국 응시수수료와 절대적 기준측면에서 비교할 때 현재 서울특별시교

1) 1964년 9월 16일 동 규칙(「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정」) 제정 당시에는 응시수수료가 200원이었으며, 응시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이 시·도 조례로 위임되기 직전인 1991년에는 응시수수료가 2,000원이었음.

2)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7조.

육청에서 일반 교과와 실기교과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20,000원의 응시수수료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표 1 참조).

- 이런 점에서 현행 교육공무원 응시수수료가 임용시험 관련 세출액 대비 10%미만의 소규모이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적은 응시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그동안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응시수수료 인상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표1] 임용시험 비용 대비 응시자 응시수수료 부담률**

(단위: 천원)

1인당 응시수수료	학년도	선발인원 (명)	접수인원 (명)	응시수수료 징수액(A)	임용시험 관련 세출액(B)	임용시험 관련 세출액 대비 응시수수료 징수율 (C=A/B*100, 단위:%)
2만원	2013	1,286	8,697	176,000	2,486,139	7.0
	2014	1,480	7,748	156,380	2,637,182	5.9
	2015	1,041	7,070	144,080	2,232,397	6.4
총계		3,807	23,515	476,460	7,355,720	6.4

**[표2] 전국 시·도교육청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단위: 원)

지역	응수수료(원)		비고
	일반교과	실기교과	
경기도 등 14개	25,000	35,000	*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낮음 * 서울사립초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3만원(2015년)
충남	25,000		
대전	20,000	30,000	
서울	20,000		

### 3) 응시수수료 인상에 따른 세수 신장성에 대한 의견

- 지난 3년간 서울시교육청 전체 세입 및 자체수입에서 응시수수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먼저 전체 세입대비 응시수수료 비율이 0.002%이고 자체수입 대비 응시수수료 비율은 0.069% 정도로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응시수수료를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인상하더라도 전체 세입대비 응시수수료 비율이나 자체수입 대비 응시수수료 비율의 변동이 거의 없어 응시수수료 인상에 따른 세입증가 폭은 크지 않다 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입액 대비 응시수수료 징수액 현황

(단위: 천원)

회계 연도	전체 세입액 (A)	자체 수입액 (B)	응시수수료 징수액 (C)	응시수수료 징수액 대비 전체 세입액 비율 =(C/A)*100	응시수수료 징수액 대비 자체 수입액 비율 =(C/B)*100
2012	8,056,769,624	207,647,748	176,000	0.002%	0.085%
2013	8,171,202,533	226,747,246	156,380	0.002%	0.069%
2014	7,925,316,025	208,146,633	144,080	0.002%	0.069%

- 한편 시험응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50%의 응시수수료 인상은 청년 실업률의 증가, 물가 상승, 경제성장 둔화 등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심리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따라서 동 안건 심의시 수수료 인상 필요성과 세수 신장성, 그리고 시민 부담의 증가등 상기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상 여부를 심의할 필요가 있고, 타 시도와 같이 일반교과와 실기교과를 구분하여 수수료를 차등화 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000원” 을 “30,000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응시수수료) 서울특별시 교육 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자는 1인당 <u>20,000원</u>의 응시수 수료를 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응 시원서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등의 방 법으로 낼 수 있다.</p>	<p>제2조(응시수수료)----- ----- -----<u>30,000원</u>----- ----- ----- ----- -----.</p>